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27일, 이해민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2. 2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 3.

17.)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3. 24.)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해민의원)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과업내용의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 또한 빈번하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최근 일부 국가기관등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제도의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工程)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이 일정 진도에 다다른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행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권과 중복될 소지가 있고,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국가기관등의 행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소프트웨어사업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

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자원 확보를 의무화하고 중복 개최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되, 개최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예산보다 광의의 개념인 재원의 확보를 의무화하여 수주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기 용이하게 하였고, 불필요한 개최나 중복 개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발주자와 수주자 간 이견이 없는 단순·형식적 계약의 경우를 고려하여 심의절차를 간소화뿐 아니라 생략도 할 수 있도록 수정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0조제2항 중 “예산을”을 “재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업심의위원회를”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소화할”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 ----- ----- -----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 ----- ----- ----- ----- ---재원을-----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④ ----- ----- ----- ----- ----- ----- ----- ----- ----- -----

	<u>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u> 를 개최하여야 한다.	----- ----- <u>특별한</u> <u>사정이 없는 한 과</u> <u>업심의위원회를</u> --- -----.
<u><신 설></u>	⑤ <u>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u>	⑤ ----- ----- ----- ----- ----- ----- --- <u>간소화하거나 생략할</u>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개정안과 같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및 제3항에”를 “, 제3항 및 제4항에”로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업심의위원회 의무적 개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생략)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 -----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 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u><신설></u>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u>제1항 및 제3항에</u> 따른 과 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과 업내용의 확정·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u>제3항 및 제4항에</u>--- ----- ----- ----- ----- ---
---	---